LG복지재단 자립지원센터 신축공사 입찰

정량평가 중 신인도 평가기준

1) 기본원칙

가) 단독입찰은 사전심사 대상자의 신인도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심사항목	등급평점	평 가 방 법	배점한도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2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5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0.4/건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제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2
	-1.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2.0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자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2.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2 ~ -2.0
	1.6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1.2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0.8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0.4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0.4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0.8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2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2.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2.0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2.0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2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①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0.5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1.0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회 받은 자	-1
	-1.0	2회 이상 받은 자	
③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자	-0.4 /건	과태료 처분 1건당 -0.4점씩 부여하여 최대 -2점까지 부여	-2
㈎부실벌점 ①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건설업체별 합산벌점	-1.0	2점 이상 10점 미만	-3
	-2.0	10점 이상 15점 미만	
	-3.0	15점 이상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고용탄력성 결과가 우수한 자	1.0	1등급	1
	0.8	2등급	
	0.6	3등급	
	0.4	4등급	
	0.2	5등급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0.4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2

명단을 공개한 자	-0.8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1.2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1.6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2.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1.0	A : 1등급	1
	0.5	B : 2등급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A : 최우수	1
	0.5	B : 우수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3) 신인도 평가 시 유의사항

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나) 1개의 업체가 신인도 평가 시 동일 심사항목 안에서 가점이나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해당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된 경우는 재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처분일과 효력발생일이 다른 경우 효력발생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에 따른 시정명령의 경우 행정처분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 부실벌점 평가는 ‘가-8)’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가 적용되는 2024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자가 분할, 합병, 사업 양도.양수(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가점과 감점이 혼재된 항목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 합병은 합병 후 신설된 업체, 분할은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 사업양수도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를 말한다.

바) 전문공사는 심사항목 “㈑”, “㈒”에 대하여 평가하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는 “㈒”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다만, “마”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심사항목 “㈑”, “㈒”, “㈓”, “㈔-③”, “㈖”, “㈗” 관련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아) 사고사망만인율과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최근연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연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연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연도 1년 전이나 2년 전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자) “㈓”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부 고시)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0.2점을 부여한다.

차) “㈖”와 “㈗”의 고용탄력성 평가와 임금체불 공개횟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가장 최근 1년이내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 점수 기준) 자료로 평가한다.

(2)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및 “㈙”녹색건축 인증등급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로 평가한다.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녹색건축인증서’로 평가한다.

(3) 입찰참여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4)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과 녹색건축 인증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가 포함된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평가점수에 건축공사의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만큼만 인정한다.

타)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의 해당지역 범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 전입일은 가장 최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